

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,
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
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이광호 의원입니다.

- 「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- 지금부터 본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531호
「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- 조례안의 취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
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

및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에서는 장애인 차별 금지와 장애인이 공적 생활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.

그러나 현행 조례에서는 장애인 편견과 차별 소지가 있는 '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'로 위원 위촉 해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자고 하며,

또한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이 '건설기술자'를 '건설기술인'으로 순화하여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된 바 이를 반영하는 한편,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.

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존경하는 위원 여러분,

아무쪼록,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